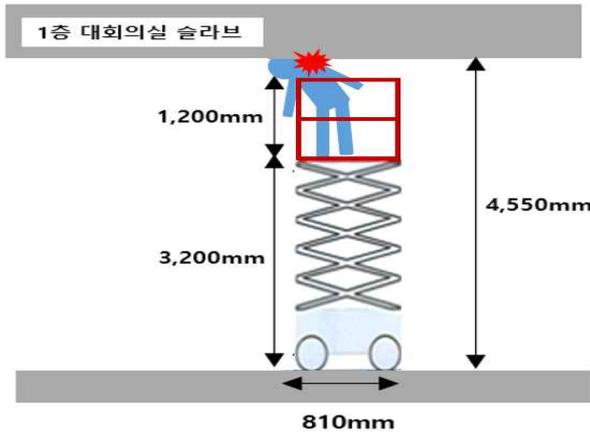




## 재해 개요

- 2019.5.7.(화) 부산시 강서구 소재 ○○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중 1층 대회의실에서 ○○○ 소속 작업자(전기공)가 슬래브 전선 플렉시블관 인입 작업 중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으로 슬래브와 고소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 발생 원인

-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부적절
  - 고소작업대는 난간대에 끼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상승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, 과상승방지장치의 유효높이 미확보 및 부착된 과상승방지장치 2개소 중 1개소가 가동전력의 전선이 절단되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



## 재해 예방 대책

- 작업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
  -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상승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치(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유효높이 설정)하여야 하고, 작업 전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

타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그림 ( 좌: Bar 형태로 설치, 우: 봉 형태로 설치 )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